#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5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이해식・민병덕・박정현

서영교 · 조정식 · 박상혁

정을호 · 한병도 · 서영석

김영호 · 김태선 · 정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임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1 항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①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 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 여야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 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 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 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 ③ ~ ⑥ (생 략)
- ⑦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u>으로 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